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박완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512
----------	------

발의연월일 : 2017. 9. 21.

발의자 : 박완주 · 노웅래 · 서영교

박주민 · 윤관석 · 김철민

어기구 · 기동민 · 인재근

양승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산림청장은 임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임업진흥계획에 따라 지역별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산림기본법」에 규정된 산림기본계획 또는 지역산림계획과 중복되어 행정의 복잡화와 비효율적 운영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임업진흥계획 또는 지역별 진흥계획이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또는 지역산림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임업진흥계획 또는 지역별 진흥계획이 각각 수립된 것으로 하여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임업진흥권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업진흥계획 또는 지역별 진흥계획이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또는 지역산림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임업진흥계획 또는 지역별 진흥계획이 각각 수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업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임업진흥계획 및 지역별 진흥계획 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1조(임업진흥계획의 수립) ① · ② (생 략) <u><신 설></u> <u>③ (생 략)</u></p>	<p>제21조(임업진흥계획의 수립)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업진흥계획 또는 지역별 진흥계획이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또는 지역산림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임업진흥계획 또는 지역별 진흥계획이 각각 수립된 것으로 본다.</u> <u>④ (현행 제3항과 같음)</u></p>